

「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391호)을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18일  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건설기계 관리법」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용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,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용 건설기계 중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기종들에 대해 신규등록을 제한(최대 2년)하여 수급조절 시행

### 2. 주요내용

가.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

-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1]의 제6호 덤프트럭, 제14호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
-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(2020. 7.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)

나. 시행일 : 2024. 1. 1

다. 수급조절 기간 : 2024.1.1. ~ 2025.12.31.

라. 수급조절방법

-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
  - 콘크리트믹서트럭과 '20.7.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
  - 인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
  -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.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%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
  -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전년도 12.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5%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
- 다만, 멸실, 수출, 도난,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건설산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
- 전자우편 : ysj0321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547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(전화 044-201-3493, 팩스 044-201-554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